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3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최기찬, 강석주, 김성준,
김원태, 김인제, 남창진,
박승진, 박철성, 송도호,
유만희, 유정희, 이영실,
정준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주택 일부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여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입주민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
-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사회주택 사업자의 이용에 구조적 제약이 있고, 그 외 타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 사회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
- 이에 사회주택의 보증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 보호 및 사회주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함(안 제3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보조”를 “보조,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) 시장·자치구청장·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(이하 “시장 등”이라 한다)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</u></p> <p>6. ~ 8. (생략)</p>	<p>제3조(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><u>보조,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</u>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 평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서울특별시 관련부서(주택실 임대주택과) 확인 결과 기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권 봉 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